

제325회 정례회
2013. 12. 20(금)

심 사 보 고 서

- 재단법인 오송비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20(금)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3년 11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12월 3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2월 10일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김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일부내용이 2003년 개정당시 여건에 맞게 규정되어 있어 최근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 이전,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개최 등의 주변여건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으로 주변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변경(안 제1조)
-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사업'을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진흥 등 현재 여건에 맞게 변경(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문홍열)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현행 조례의 목적은 최근 주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단의 사업 또한 보건·의료·바이오 분야의 육성과 진흥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바이오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조례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이념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을 진흥하기”를 “오송생명과학단지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로, “운영·지원 하기”를 “운영·지원하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사업
2. 오송생명과학단지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
4. 바이오 분야 홍보·교육사업
5.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사업
6. 기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공유재산을 사용”을 “공유재산 사용을”로 한다.

제10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령”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오송국제 바이오엑스포의 이념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오송생명 과학단지</u>와 <u>오송첨단의료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u> ----- ----- <u>운</u> <u>영·지원하기</u> ----- ----- -.</p>
<p>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 12. (생 략)</p> <p>② (생 략)</p>	<p>제4조(정관) ① ----- ----- <u>각 호</u>----- -----.</p> <p>1. ~ 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u>각호</u>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u>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후속 사업 발굴추진</u></p> <p>2. <u>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진흥</u></p> <p>3. <u>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u></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사업) ----- <u>각 호</u>----- -----.</p> <p>1. <u>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사업</u></p> <p>2. <u>오송생명과학단지</u>와 <u>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u> 활성화를 위한 사업</p> <p>3. <u>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u></p> <p>4. <u>바이오 분야 홍보·교육사업</u></p> <p>5. <u>바이오 관련 인력양성사업</u></p>

<신 설>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 2. (생략)

제7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
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
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
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
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기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재단의 재산) -----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비 등 지원) -----

----- 범위-----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 공유재산
사용을-----.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행규칙) ----- 시
행에-----
-----.

<삭 제>